

군산시 공고 제2020-1740호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군 산 시 장**「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폐지)이유**

이 규칙은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에 대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함이었으나,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8.11.16.) 제2조(정의) 및 제4조(지원내용)에 의거 전라북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에 교복지원 내용 포함으로 「군산시 교복지원 조례」의 실효성이 사라짐.

2. 주요내용

-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10일까지 군산시장(참조:교육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전화,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교육지원과

(2) 전화 : 063-454-2582

(3) FAX : 063-454-257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계(☎ 454-25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 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0-1759호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노인복지기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기금의 목적이 일반회계사업과 유사하여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3. 폐지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경로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계(☎063-454-3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다. 의견 제출장소

- 주 소 : (54078)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3층 경로장애인과
- 전 화 : 063-454-3183
- 팩 스 : 063-454-3139
- 전자우편 : hssongod@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된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0-1770호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및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폐지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초저금리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의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기존 청소년사업과 중복되므로,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2020.12.31.)함에 따라 건전한 재정을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함.
- 나.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 우) 54078
- 전 화 : 063-454-3242, FAX : 063-454-415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계(☎ 063-454-3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각1부.
2. 폐지조례안 및 폐지규칙안 의견서 각 1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폐지에 따라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청 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군산시청 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폐지조례안 내 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2020-1778호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회계법」 제29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
·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안 제8조 제9조제2항 제17조제7항 제28조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용어 정비
· “**정수 책정 물품**”을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변경(안 제9조제1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관련 위원회 변경
· “**전라북도의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군산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안 제11조제1항~제3항)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반영
 - 불용품 처분 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안 제17조제4항 및 제17조제5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 반영
 -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자를 “**물품관리관**”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검사공무원**”으로 변경(안 제27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소모품 기준 개정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소모품 취득단가를 “**3만원 이하**”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변경(별표1)

3. 의견제출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회계과(전화 : 063-454-2373, FAX : 063-452-816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계약계

전화 063-454-23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참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품은**”을 “**물품의**”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물품관래**”를 “**물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효률적**”을 “**효율적**”으로 한다.

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정수 측정 물품**”을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관서당경비**”를 각각 “**일반운영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라북도의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군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각각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하나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16조**”로, “**1에**”를 “**어느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를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2조”를 “제9조”로, “정수물품에”를 “정수 책정 물품에”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영 제90조에 따라 시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제28조”를 “제27조”로, “물품출납원”을 “물품관리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을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으로, “때에는규칙”을 “때에는 규칙”으로 한다.

제30조 중 “5일이내에그”를 “5일이내에 그”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32조”를 “제30조”로 한다.

제32조 중 “제33조”를 “제31조”로 한다.

제33조 중 “제32조 내지 제43조”를 “제30조 내지 제32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 품 의 품 종 · 상 태 구 분

○ 물품의 종류

-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삭제 2006.05.10>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 (2) 소모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류,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물품</u> 은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물품</u> 의 ----- -----.
제2조(관리책임) ①·② (생략) ③시장은 <u>물품관</u> 래에 필요하다면 각 관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u>규칙</u> 으로 정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물품관리</u> ----- ----- -----. ④----- ----- ----- 「 <u>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u> 」(이하 “ <u>규칙</u> ”이라 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u>효율적</u> 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2. (생략) ② (생략)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u>효율적</u> ----- ----- -----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 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 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

- 재무관-----

-----.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 물품관
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정수관리대
상물품-----

-----.

②재무관-----

-----.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반운영비-----
-----.
②----- 일반운영
비-----

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
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
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
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
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
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전라
북도의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
집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
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

-----.

③일반운영비-----

-----.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 군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이하 “기부심사위원회” 라
한다)-----
--.

②----- 기부심사위원
회 -----
-----.

③기부심사위원회-----

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생략)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 5. (생략)

③ (생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어느하나-----

-----.

1. ~ 8. (현행과 같음)

②-----
----- 어느하나에-----

-----.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

----- 어느하나에-----

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 4. (생략)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 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둘 이상 -----

3. · 4. (현행과 같음)

④-----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

⑤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

-----.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생 략)

⑦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 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생 략)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제18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24조(물품출납원 장부) ① (생 략)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

⑥ (현행과 같음)

⑦재무관-----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제17조

제1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제22조-----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출납원 장부) ① (현

행과 같음)

②-----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④ (생략)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관서 포함)이, 기타 관서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

제9조----- 정수 책정
물품에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라 시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7조-----

----- 물품관
리관 등-----

②-----

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
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
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
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
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9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
는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
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
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
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생략)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
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가 발령일로부터 5일이
내에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제31조(인계의 절차)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
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 . -----
----- 재무관 -----
-----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물품검사서) ①-----
제27조 및 제28조제1항-----
----- 때에는 규
칙-----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

----- 5일이내에 그 -
----- .

제31조(인계의 절차) ①제30조--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

제32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

----- 제31조

-----.

제33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

----- 제3
0조 내지 제32조-----
-----.

군산시 공고 제2020-1779호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띄어쓰기, 오타 등 수정(안 제2조제1항, 제17조)
- 기타 문맥에 맞지 않는 조항 수정(안 제6조, 제19조)

3. 의견제출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회계과(전화 : 063-454-2373, FAX : 063-452-816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계약계

전화 063-454-23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참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규칙 제 호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의한여**”를 “**의하여**”로 한다.

제6조 중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7조 중 “**서식 에 의하고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를 “**서식에 의하고 물품검사**”로 한다.

제19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9조) 중 “**제33조**”를 “**제30조**”로 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물품사무관리장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장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u>의하여</u>	① ----- <u>의하여</u> ---
물품관리관 · 물품출납원 · 분임	-----
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	-----
여 각각 지정한다. 물품관리관	---. -----
은 본청은 회계과장, 제1관서는	-----
주무과 주무과장, 읍은 읍장,	-----
면은 면장, 동은 동장, 사업소	-----
는 소장, 물품출납원은 본청은	-----
계약담당주사, 제1관서는 주무	-----
과 주무담당주사 읍은 읍 · 면	-----
주민생활담당주사, 동은 총무	-----
업무담당 자, 사업소는 주무담	-----
당주사, 물품운용관은 본청 ·	-----
제1관서 관 · 과장, 분임물품출	---
납원은 본청 · 제1관서 실과주	
무담당주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 제18
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	조-----
(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	-----
에 의한다.	-.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
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	-----
서는 별지 제15호 <u>서식</u> 에 의	----- <u>서식</u> 에 의하고 물품

하고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에 의한다.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8호
서식 에 의한다.

검사-----
-----.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 제30
조-----

----.

군산시 공고 제2020-1780호

공 고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9.13.일부개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 (안 제1조) (개정) 영제58조제2항, 제63조 ⇒ 제57조제2항, 제59조, 제60조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및 단서 신설(안 제2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장 선정 및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 신설(양성평등기본법)

- 위원회 위원장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3조)
 - 위원장 직무대행 선정 관련 개정
- 위원회 기능부분 상위법령에 연계 개정(안 제4조)
- 서면심의 요건 및 위원회 간사와 서기 담당자 지정(안 제5조)
- 위원 해촉관련 상위법령에 연계 개정 (안 제11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위법령에 연계 개정(안 제12조)
- 별표 별지와 같이 개정
 - 심사 또는 자문비 관련 사항 분리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회계과 (전화 063-454-2374, 팩스 063-452-8161)
- 전자우편 : rezonaga@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재산관리계(전화 063-454-2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법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계약심의위원회**”를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로, “**영 제58조제2항, 제63조**”를 “**영 제57조제2항, 제59조, 제60조**”로, “**상한금액 및**”을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과 위원장 1인**”을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있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으로, “**직무**”를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대상은 영 제108

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규모이상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내용의특수성”을 “내용의 특수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시장은 군산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간사는 계약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위촉직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감독대상 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제13조제1항 단서 중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을 “위원회 관련”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100,000	
	여 비	민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공무원여비규정
관계 전문가	심사 또는 자문비	200,000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지급의예외)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비용을 지급 받은 자에게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제58조제2항,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u>상한금액</u>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같은법 시행령</u> ----- ----- <u>군산</u> <u>시 계약심의위원회</u> ----- ----- ----- <u>영제</u> <u>57조제2항, 제59조, 제60조</u> --- ----- --- <u>및</u> ----- -----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u>1인</u> 과 위원장 <u>1인</u> 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 <u>1인</u> ----- ----- -----.
② <u>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u>	② <u>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u>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경험과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
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
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
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
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 사무-----

-----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

-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

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위촉 위원 중 연장자 순

으로 위원장의 직무---.

②--- 당연직 위원-----

-----.

-----.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법 제32

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

고 심의 대상은 영 제108조제1

항제2호에서 정한 규모이상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 략)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
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후단 신설>

②·③ (생 략)

<신 설>

제6조(소위원회) ① (생 략)

<삭 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
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
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다만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
되, 간사는 계약담당과장이 되
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장은 군산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
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
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
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
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음)

② -----
----- . -----
----- 내용의 특수성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
----- 간사는 계약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이 위촉직 위원이 영 제106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
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감독대
상 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
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사로 한다. 이 경우 그상한금액
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
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
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
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있다. 다
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감독대
상 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
사는 영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
만원이상의 공사로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
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
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20-1793호

공 고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9. 12. 9. 일부 개정) 개정 및 행정안전부 조례개정 권고
 - －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민생안정과 주민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조문 신설(안 제3조제2항)
-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2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신설
(안 제20조의2)
- 상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 조문 변경(안 제38조제1항)
- 특혜 소지 개선을 위한 제44조(청사의 부지) 조항 삭제
- 근무지 이탈금지 지역(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 관사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중 단서 조문 및 제3호,
제5호, 제7호 조문 변경(안 제54조)
- 상위법령에 맞게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단서 신설(안 제6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회계과 (전화 063-454-2382, 팩스
063-452-8161)

- 전자우편 : with2230@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재산관리계(전화 063-454-2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0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제20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고 단, 3급 관사의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금지 지역(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 이하 “도서지역”이라 함)의 관사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5호 및 제7호 중 “**관사**”를 각각 “**관사·3급 관사중 도서지역의 관사**”로 한다.

제6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8. 제20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생략)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20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u>
	<u>1. 사업계획서</u>
	<u>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u>
	<u>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u>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삭 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2.-----
-----서로 맞
달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

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법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

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
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 10. (생략)

제44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
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
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
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
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비는 예
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보일러 운영비(다만, 1급 관
사에 한함)

5. ~ 10. (현행과 같음)

제44조(청사의 부지) <삭제>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있고 단, 3급 관
사의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
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8조제2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금
지 지역(연륙되지 않은 도서지
역, 이하 “도서지역”이라 함)
의 관사에 한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 관사
· 3급 관사중 도서지역의 관

4. (생략) 5. 전기요금(다만, 1급 · 2급 관사에 한함) 6. (생략) 7. 수도요금(다만, 1급 · 2급 관사에 한함) 8. (생략)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 상금 지급) ① (생략)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 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 로 한다. <단서 신설> ③·④ (생략)	<u>사</u>---- 4. (현행과 같음) 5. ----- 관 <u>사·3급 관사중 도서지역의</u> <u>관사</u>----- 6. (현행과 같음) 7. ----- 관 <u>사·3급 관사중 도서지역의</u> <u>관사</u>----- 8. (현행과 같음)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 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신고한 <u>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u> <u>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u> <u>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u> <u>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u> <u>다.</u> ③·④ (현행과 같음)
--	---

군산시 공고 제2020-1796호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 중 나타난 조례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부위원장, 간사 및 서기가 될 수 있는 직위에 관한 명칭 변경(안 제2조, 제8조)
 - 주택·토지 과표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건설교통국장”을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토지정보과장”으로만 되어있는 직위를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지가관리계장”으로만 되어있는 직위를 “해당 업무 담당 계장”으로 변경
- 나. 상위법령에 따른 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3조)
 -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표준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
다. 위원회 회의 기능 추가(안 제6조)

- 심의안건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전화: 454-3993, FAX: 063-452-6929)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계(전화 063-454-
39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로, “위원회 라”를 ““위원회”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건설교통국장”을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직공무원중”을 “당해직 공무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등”을 “주택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시행령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제1호 중 “법률시행령 제8조제3항의 표준지 가격”을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표준지공시지가”로, “관”을 “대한 의견제시에 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 중 “법률”을 “법률”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

의 부분 제6호 및 각 호 외의 부분 제7호 중 “제21조”를 각각 “법률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 외의 부분 제8호부터 각 호 외의 부분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9.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10.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지가관리계장”을 “해당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u> 」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u>위원회</u> ” 라 -----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u>자치행정국장·건설교통국장</u> 이 된다.	② ----- ----- <u>해당 업무 담당국장</u> -----.
③ 위원회의 위원은 <u>당해직공무원중</u>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③ ----- <u>당해직 공무원</u> 중 ----- -----.

1. (생략)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 및 주택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3. ~ 6. (생략)

④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법률 제25조제1항에 의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률시행령 제8조제3항의 표준지 가격의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5. 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1. (현행과 같음)

2. -----
- 주택 등-----

3. ~ 6. (현행과 같음)

④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시행령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표준지공시지가----- 대한 의견제시에 관-----

2. ~ 4. (현행과 같음)

5. 법률-----

6. 법률 제21조-----

사항

7.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8. (생 략)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통할하고 이를 대표한다.

② (생 략)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7. 법률 제21조-----

8.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9.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10.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11. (현행 제8호와 같음)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

----- . 다만, 심의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

② (생 략)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② 간사는 <u>토지정보과장이</u> 되고 서기는 <u>지가관리계장이</u> 된다. ③ (생 략) 제11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u>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u>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해당 업무 담당 과장</u>----- <u>해당 업무 담당 계장</u>-----.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과 여비) ----- ----- 때 에는 「<u>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	--

군산시 공고 제2020-1801호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개정
- 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실시한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에 불복하는 자를 제한하는 조항은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하기에 불합리한 조항 삭제
- 다. 감염병 및 재난상황 등 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경계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신규 조항 필요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관련 명칭 변경(안 제2조 내지 제22조)
 -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 등으로 변경
- 나.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변경 및 추가(안 제5조 제3호, 제6호)

- 1) 종전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을 법 제12조제2항 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 등의 허용 여부로 변경
-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추가

다.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기능 추가 (안 제16조 제3항)

- 1) 감염병 및 재난상황 등 발생 시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추가

라. 경계결정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조항 삭제 (안 제19조)

-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경계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없이 이의신청 가능하므로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하지 않기 위하여 삭제

3. 의견제출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청(참조: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토지정보과(전화 : 454-4332, FAX : 063-452-69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계

전화 063-454-433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지구”란”을 ““지적재조사지구”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여부

6. 법 제21조의2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0조제1항제1호 중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내”를 “지적재조사지구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담당”을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호 중 “사업대행자”를 “사업수행자”로 한다.

제22조제6호 및 제8호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운영 (KLIS 연계)”를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지적재조사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1.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 -----.
2.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지구”란 ---- ----- ----- ----- ----- -.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위원회는 본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5조(위원회 기능) ----- -----. <u><단서 삭제></u>

의 의결에 한하여 참여한다.

1. 시장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과

우선순위 조정

3.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대상

4. · 5. (생략)

<신설>

6. (생략)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
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
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
업지구내의 분쟁 및 직접적
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생략)

② · ③ (생략)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삭제>

<삭제>

3.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
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
공부정리의 허용여부

4.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1조의2에 따른 조정
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

1. -----
----- 지적재조사지구내-----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
적재조사지구----- 토
지현황조사 -----

-----.

제11조(의견청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5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생략)

제16조(회의)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

제11조(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지적재조사지구-----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간사) ① -----

담당계장---.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9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
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
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
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 등을 당사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
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
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삭 제>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
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
를 신청하는 경우

제21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2. (생 략)
3.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및 사
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에 관한 사항
4. (생 략)

제22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5. (생 략)
6.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7. (생 략)
8.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9. ~ 11. (생 략)
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
영 (KLIS 연계)
13. ~ 19. (생 략)
20.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 관리
21. ~ 23. (생 략)

제21조(기능) -----
-----.

1. · 2. (현행과 같음)
3. ----- 사업
수행자-----

4. (현행과 같음)

제22조(사무분장) -----
-----.

1. ~ 5. (현행과 같음)
6. 지적재조사지구 ----
7. (현행과 같음)
8. 지적재조사지구 -----
9. ~ 11. (현행과 같음)
12. ----- 운영
13. ~ 19. (현행과 같음)
20. 지적재조사지구 -----

21. ~ 23.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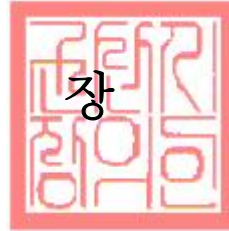
군산시 공고 제 2020-1805호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가. 징수조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22조에 의거 소하천 등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등을 효율적으로 징수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 지방세법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 소액 징수면제 금액 : 당초 500원 미만 → 변경 2,000원 미만
- 과오납금 등 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 권익 보호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인용법령 제명에 따른 조항 정비 필요 ※ 지방세법 일부개정('10.1.1.)

나. 시행규칙

- 상위법령 및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항, 용어 및 문장 정비 필요
 - ※ 지방세법('10.1.1.), 지방자치법('11.7.14.), 소하천정비법('16.1.27.) 등
- 점용료 등의 부과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정비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조례 일부개정(안)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제3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u>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u>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① <u>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 1. <u>과오납한 경우</u> 2. <u>제17조, 제18조 및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u> ② <u>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잔여 점용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u>

○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제5조 (구제수단의 고지)	제5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등)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 등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입고지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제7조 (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산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산시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3. 의견제출

-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청(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 : 063-454-3853, FAX : 063-454-3829)
- 전자우편 : dolton84@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하천계(전화 063-454-38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를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를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소하천이라 함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으로서 법 제3조의3에 따라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500원미만**”을 “**2,000원 미만**”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②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잔여 점용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별표 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 용 료 등 의 산 정 기 준 표 (제3조 관련)

구 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이하인근토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6
2. 토지(소하천등부지)의 점용	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5 (2) 미식(경작)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다만,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 모래, 자갈등을 채취할 때는 제7호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3. 소하천등의 부속물의 점용	제1호에 준한다.

구 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 연액 m^3/Sec당 100,000원 또는 이론마력당 200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 액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table> <tr><td>관경 25m/m이하 월액</td><td>5,000원</td></tr> <tr><td>관경 50m/m이하 월액</td><td>20,000원</td></tr> <tr><td>관경 75m/m이하 월액</td><td>30,000원</td></tr> <tr><td>관경 100m/m이하 월액</td><td>50,000원</td></tr> <tr><td>관경 200m/m이하 월액</td><td>60,000원</td></tr> <tr><td>관경 300m/m이하 월액</td><td>80,000원</td></tr> <tr><td>관경 400m/m이하 월액</td><td>110,000원</td></tr> <tr><td>관경 500m/m이하 월액</td><td>140,000원</td></tr> <tr><td>관경 600m/m이하 월액</td><td>190,000원</td></tr> <tr><td>관경 700m/m이하 월액</td><td>250,000원</td></tr> <tr><td>관경 800m/m이하 월액</td><td>300,000원</td></tr> </table> 자연취수 및 801m/m 이상은 월 최대취수 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세제곱미터당 100원씩 적용 ※동일인이 동일 지역에서 동일 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 등은 관별 최대 취수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사업기준 해당의 점용료 등 적용 다. 농업용수 0.05~0.5m^3/Sec까지 연액 10,000원 0.5m^3/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이하 월액	20,000원	관경 75m/m이하 월액	30,000원	관경 100m/m이하 월액	50,000원	관경 200m/m이하 월액	60,000원	관경 300m/m이하 월액	80,000원	관경 400m/m이하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이하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이하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이하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이하 월액	300,000원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이하 월액	20,000원																						
관경 75m/m이하 월액	30,000원																						
관경 100m/m이하 월액	50,000원																						
관경 200m/m이하 월액	60,000원																						
관경 300m/m이하 월액	80,000원																						
관경 400m/m이하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이하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이하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이하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이하 월액	300,000원																						
5. 지하의 우수 채취	제4호에 준한다.																						
6. 배수(주수)	가. 공업용수의 배수(주수) 월10,000m^3~200,000m^3까지 월액 20,000원 1,000m^3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용수의 배수(주수) 월 10,000m^3~200,000m^3까지 월액 15,000원 1,000m^3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단, 농업용수 · 일반담발전용수 · 월 1,000m^3미만은 제외한다.																						

구 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7. 토석, 모래, 자갈 등의 소하천 산출물 채취	가. 시장이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등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가 없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 가목 조사는 2개지역이상에서 실시 매년초에 당해 년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시장이 조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등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한다.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별표 2]

점 용 료 등 의 감 면 기 준 표(제4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100%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	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0%
5. 소하천등의 자연 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우수점용의 경우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
7. 농지개량조합의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농업용수 이외의 목적은 제외)	100%
8.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비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u> · <u>징수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u>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u>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u>소하천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지역으로 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하고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u>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 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u>500원미만인</u>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 ⑤ (생 략)	<u>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u> · <u>징수 조례</u> 제1조(목적) ----- ----- ----- ----- <u>소하천 산출물의 채취</u> <u>료 등</u>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u>소하천이라 함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으로서 법 제3조의3에 따라 결정·고시한 구역</u>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 ----- 2,00 <u>0원 미만</u>-----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 ② (생 략)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②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잔여 점용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을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을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10퍼센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의한다”를 “각호에 의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지된”을 “실효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를 “폐천부지(처분)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구제수단의 고지)”를 “(이의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구제조항”을 “이의신청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점용료 등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입고지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중 “군산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를 “군산시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u> · <u>징수조례시행규칙</u> 제2조(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 2 제8호 규정에 의한 시장 이 정하는 감면율이라 함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u>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 동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u> 3. <u>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 용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6 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준용한다.</u> 제3조(토석 · 모래 · 자갈등의 채 취 점용료 분납) ①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 · 모 래 · 자갈 등의 채취 점용료의 분납은 다음 <u>각호의 1에 의한 다.</u> 1. · 2. (생 략) ② (생 략)	<u>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u> · <u>징수 조례 시행규칙</u> 제2조(점용료의 감면) ----- ----- -----. 1. (현행과 같음) 2. <u>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이 공 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 -----</u> 3. <u>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 용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100퍼센트</u> 제3조(토석 · 모래 · 자갈등의 채 취 점용료 분납) ①----- ----- ----- <u>각호 에 의한다.</u>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산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이의신청 등) ① -----

----- 지방자치법

제140조----- 이의신청

내용-----.

②점용료 등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입고지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7조(준용) -----

----- 군산시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공고 제2020 - 19호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사용료 미반환 규정이 법령 위반 및 소극행정 유발로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추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료 반환사유 예시 규정 (안 제9조)
 - 현행의 사용료 미반환 원칙에서 반환사유 예시 명시 규정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먹거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65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전화: 454-3042, FAX: 452-300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

전화 063-454-30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2020-19호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입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때
2. 과오납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 반환) <u>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u>	제9조(사용료 반환) <u>납입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
1. <u>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u>	1. <u>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때</u>
2. <u>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u>	2. <u>과오납한 경우</u>

군산시 고시 제2020 - 13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28.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허가 2020-0012호 (2020. 8. 27.)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 성명 : 군산시장(수도과)
- ③ 허가목적 : 방축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129-1번지 지선 공유수면
- ⑤ 면 적 : 720m²
- ⑥ 허가기간 : 2020. 8. 27. ~ 2034. 12. 31.까지

군산시 고시 제2020-135호

군산 임피구획정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군산 임피구획정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0년 8월 28일

군 산 시 장

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53	임피 구획정리지구	임피면 월하리, 술산리 일원	148,691.9	-	148,691.9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25	술산2	주거	임피면 월하리, 술산리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	148,691.9	군산고329 (97.7.24)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경 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14	20	보조 간선 도로	462	술산리 723도 남측지구계	월하리 914도 동측지구계	일반 도로		군산고329 (97.7.24)	
기정	중로	2	182	15	집산 도로	638	술산리 723도	월하리 914도	일반 도로		군산고329 (97.7.2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91	8	국지 도로	120	중로2-182 월하리 914도	북측지구계 월하리 912도	일반 도로		군산고329 (97.7.24)	
기정	소로	2	1092	8	국지 도로	594	소로2-1091 월하리 912도	소로2-1093 월하리 916도	일반 도로		군산고329 (97.7.24)	
기정	소로	2	1093	8	국지 도로	124	중로2-182 월하리 914도	북측지구계 월하리 912도	일반 도로		군산고329 (97.7.24)	
기정	소로	2	1094	8	국지 도로	105	중로2-182 월하리 914도	북측지구계 월하리 913도	일반 도로		군산고329 (97.7.24)	
기정	소로	2	1095	8	국지 도로	191	중로2-182 월하리 914도	소로2-1096 월하리 915도	일반 도로		군산고329 (97.7.24)	
기정	소로	2	1096	8	국지 도로	149	중로2-182 월하리 914도	북측지구계 월하리 915도	일반 도로		군산고329 (97.7.24)	
기정	소로	2	1097	8	국지 도로	149	중로2-182 월하리 914도	북측지구계 월하리 916도	일반 도로		군산고329 (97.7.24)	
기정	소로	2	1098	8	국지 도로	490	소로2-1095 술산리 721도	중로2-182 술산리 723도	일반 도로		군산고329 (97.7.24)	
기정	소로	2	1099	8	국지 도로	115	중로2-182 술산리 723도	남측지구계 술산리 721도	일반 도로		군산고329 (97.7.24)	
기정	소로	2	1100	8	국지 도로	310	소로2-1098 술산리 721도	소로2-1098 술산리 722도	일반 도로		군산고329 (97.7.24)	
기정	소로	2	1101	8	국지 도로	91	중로2-182 월하리 723도	소로2-1098 술산리 721도	일반 도로		군산고329 (97.7.24)	
기정	소로	2	1102	8	국지 도로	104	소로2-1092 월하리 916도	북측지구계 월하리 916도	일반 도로		군산고329 (97.7.24)	
기정	소로	2	1103	8	특수 도로	17	중로2-182 월하리 914도	남측지구계 월하리 914도	보행자 전용도로		군산고329 (97.7.24)	
기정	소로	2	1104	8	특수 도로	17	중로2-182 월하리 914도	남측지구계 월하리 914도	보행자 전용도로		군산고329 (97.7.24)	
기정	소로	2	1105	8	특수 도로	9	중로2-182 월하리 914도	소로2-1092 월하리 916도	보행자 전용도로		군산고329 (97.7.24)	
기정	소로	2	1106	8	특수 도로	20	중로1-114 술산리 723도	소로2-1098 술산리 722도	보행자 전용도로		군산고329 (97.7.24)	
기정	소로	3	854	6	국지 도로	118	월하리 912도 소2-1091	월하리 912도 소2-1092	일반 도로		군산고329 (97.7.24)	
기정	소로	3	855	6	국지 도로	113	월하리 912도 소2-1095	북측지구계 월하리 913도	일반 도로		군산고329 (97.7.24)	
기정	소로	2	1110	8	국지 도로	229	술산리 723도 중2-182	술산리 721도 소2-1099	일반 도로		군산고42 (19.4.26)	
기정	소로	2	1111	8	국지 도로	145	술산리 761대 소2-1110	술산리 761대 소2-1098	일반 도로		군산고42 (19.4.26)	
기정	소로	2	1112	8	국지 도로	64	술산리 761대 소2-1111	술산리 761대 소2-1110	일반 도로		군산고42 (19.4.26)	
기정	소로	2	1113	8	국지 도로	61	술산리 761대 소2-1111	술산리 761대 소2-1110	일반 도로		군산고42 (19.4.26)	
기정	소로	2	1114	8	국지 도로	164	술산리 761대 소2-1111	술산리 761대 소2-1111	일반 도로		군산고42 (19.4.26)	

나. 주차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116	주차장	월하리 910-2	904.6	-	904.6	군산고329 (97.7.24)	

다. 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55	55호 공원	어린이 공 원	월하리 901공	2,044.6	-	2,044.6	군산고329 (97.7.24)	
기 정	56	56호 공원	어린이 공 원	월하리 910-2공	2,430.1	-	2,430.1	군산고329 (97.7.24)	

라. 녹지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143	녹지	경관 녹지	월하리 761대 일원	807.0	-	807.0	군산고42 (19.4.26)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	1	2,667.0	월 하리	893-1	415.2	-	415.2	단독주택용지
				893-2	726.3	-	726.3	"
				893-3	261.8	-	261.8	"
				893-4	554.9	-	554.9	"
				893-5	372.8	-	372.8	"
				893-6	336.0	-	336.0	"
-	2	2,260.8	월 하리	894-1	717.4	-	717.4	단독주택용지
				894-2	903.6	-	903.6	"
				894-3	639.8	-	639.8	"
-	3	3,355.8	월 하리	895-1	850.1	-	850.1	단독주택용지
				895-2	384.5	-	384.5	"
				895-3	372.4	-	372.4	"
				895-4	788.0	-	788.0	"
				895-5	518.3	-	518.3	"
				895-6	442.5	-	442.5	"
-	4	1,437.8	월 하리	896-1	559.6	-	559.6	단독주택용지
				896-3	522.7	-	522.7	"
				896-4	355.5	-	355.5	"
-	5	3,155.5	월 하리	897-1	358.0	-	358.0	단독주택용지
				897-2	1,899.1	-	1,899.1	"
				897-3	360.0	-	360.0	"
				897-4	538.4	-	538.4	"
-	6	3,395.7	월 하리	898-1	354.1	-	354.1	단독주택용지
				898-2	339.6	-	339.6	"
				898-3	550.6	-	550.6	"
				898-4	902.9	-	902.9	"
				898-5	339.4	-	339.4	"
				898-6	176.0	-	176.0	"
				898-7	150.6	-	150.6	"
				898-8	150.6	-	150.6	"
				898-9	216.9	-	216.9	"
				898-10	215.0	-	215.0	"
-	7	4,545.7	월 하리	899-1	231.0	-	231.0	단독주택용지
				899-2	534.5	-	534.5	"
				899-3	552.7	-	552.7	"
				899-4	486.4	-	486.4	"
				899-5	198.5	-	198.5	"
				899-6	810.8	-	810.8	"
				899-7	215.0	-	215.0	"
				899-8	155.6	-	155.6	"
				899-9	198.0	-	198.0	"
				899-10	799.6	-	799.6	"
				899-11	165.1	-	165.1	"
				899-12	198.5	-	198.5	"
-	8	1,907.1	월 하리	900-1	508.4	-	508.4	단독주택용지
				900-2	324.7	-	324.7	"
				900-3	167.2	-	167.2	"
				900-4	430.7	-	430.7	"
				900-5	214.9	-	214.9	"
				900-6	261.2	-	261.2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	9	2,044.6	월하리	901	2,044.6	-	2,044.6	어린이공원
-	10	2,963.4	월하리	902	2,963.4	-	2,963.4	단독주택용지
-	11	1,241.9	월하리	903-1	257.2	-	257.2	단독주택용지
				903-2	226.2	-	226.2	"
				903-3	167.3	-	167.3	"
				903-4	343.1	-	343.1	"
				903-5	248.1	-	248.1	"
-	12	3,524.3	월하리	904-1	1,513.5	-	1,513.5	단독주택용지
				904-2	980.2	-	980.2	"
				904-3	735.2	-	735.2	"
				904-4	295.4	-	295.4	"
-	13	3,393.9	월하리	905-1	1,076.3	-	1,076.3	단독주택용지
				905-2	669.2	-	669.2	"
				905-3	264.0	-	264.0	"
				905-4	113.0	-	113.0	"
				905-5	394.9	-	394.9	"
				905-6	254.1	-	254.1	"
				905-7	188.4	-	188.4	"
				905-8	280.9	-	280.9	"
				905-9	133.1	-	133.1	"
-	14	4,216.5	월하리	906-1	811.4	-	811.4	단독주택용지
				906-2	629.8	-	629.8	"
				906-3	320.6	-	320.6	"
				906-4	646.0	-	646.0	"
				906-5	241.5	-	241.5	"
				906-6	426.4	-	426.4	"
				906-7	909.8	-	909.8	"
				906-8	231.0	-	231.0	"
-	15	4,328.0	술산리	754-1	613.1	-	613.1	단독주택용지
				754-2	755.5	-	755.5	"
				754-3	132.0	-	132.0	"
				754-4	220.1	-	220.1	"
				754-5	313.3	-	313.3	"
				754-6	473.2	-	473.2	"
				754-7	209.7	-	209.7	"
				754-8	329.2	-	329.2	"
				754-9	260.4	-	260.4	"
				754-10	747.5	-	747.5	"
				754-11	109.0	-	109.0	"
				754-12	165.0	-	165.0	"
-	16	3,629.6	술산리	755-1	343.6	-	343.6	단독주택용지
				755-2	560.2	-	560.2	"
				755-3	1,873.1	-	1,873.1	"
				755-4	276.3	-	276.3	"
				755-5	576.4	-	576.4	"
-	17	4,779.7	월하리	907-1	1,074.4	-	1,074.4	단독주택용지
				907-2	940.2	-	940.2	"
				907-3	1,023.7	-	1,023.7	"
				907-4	751.9	-	751.9	"
				907-5	989.5	-	989.5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	18	4,616.2	월하리	908-1	1,659.5	-	1,659.5	단독주택용지
				908-2	1,146.4	-	1,146.4	"
				908-3	1,163.0	-	1,163.0	"
				908-4	647.3	-	647.3	"
-	19	3,938.5	월하리	909-1	290.7	-	290.7	단독주택용지
				909-2	396.5	-	396.5	"
				909-3	307.3	-	307.3	"
				909-4	407.7	-	407.7	"
				909-5	228.6	-	228.6	"
				909-6	229.4	-	229.4	"
				909-7	700.6	-	700.6	"
				909-8	832.8	-	832.8	"
				909-9	229.8	-	229.8	"
				909-10	315.1	-	315.1	"
-	20	4,051.4	술산리	756-1	1,075.8		1,075.8	단독주택용지
				756-2	365.5		365.5	"
				756-3	733.4		733.4	"
				756-4	127.0		127.0	"
				756-5	774.2		774.2	"
				756-6	479.6		479.6	"
				756-8	495.9		495.9	"
-	21	4,131.0	술산리	757-1	491.1	-	491.1	단독주택용지
				757-2	203.5	-	203.5	"
				757-3	220.0	-	220.0	"
				757-4	309.1	-	309.1	"
				757-5	441.0	-	441.0	"
				757-6	385.2	-	385.2	"
				757-7	525.1	-	525.1	"
				757-8	489.8	-	489.8	"
				757-9	204.5	-	204.5	"
				757-10	205.3	-	205.3	"
				757-11	451.8	-	451.8	"
				757-12	204.6	-	204.6	"
-	22	1,326.4	월하리	910-1	1,326.4	-	1,326.4	단독주택용지
-	23	2,430.1	월하리	910-2	2,430.1	-	2,430.1	어린이공원
-	24	3,702.3	월하리	911-1	465.0	-	465.0	상 업 용 지
				911-2	484.0	-	484.0	"
				911-3	373.7	-	373.7	"
				911-4	899.6	-	899.6	"
				911-5	433.3	-	433.3	"
				911-6	800.8	-	800.8	"
				911-7	245.9	-	245.9	"
-	25	3,496.3	술산리	758-1	297.7	-	297.7	상 업 용 지
				758-2	779.0	-	779.0	"
				758-3	687.8	-	687.8	"
				758-4	412.5	-	412.5	"
				758-5	550.7	-	550.7	"
				758-6	457.0	-	457.0	"
				758-7	220.5	-	220.5	"
				758-8	91.1	-	91.1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	26	3,335.5	술산리	759-1	244.4	-	244.4	단독주택용지
				759-2	849.5	-	849.5	"
				759-3	642.9	-	642.9	"
				759-4	239.7	-	239.7	"
				759-5	204.6	-	204.6	"
				759-6	201.0	-	201.0	"
				759-7	595.4	-	595.4	"
				759-8	354.6	-	354.6	"
				759-9	3.4	-	3.4	"
-	27	2,012.7	술산리	760-1	381.2	-	381.2	상 업 용 지
				760-2	297.9	-	297.9	"
				760-3	202.2	-	202.2	"
				760-4	204.4	-	204.4	"
				760-5	421.7	-	421.7	"
				760-6	505.3	-	505.3	"
-	28	3,580.0	술산리	1	538.0	-	538.0	단독주택용지
				2	520.0	-	520.0	"
				3	500.0	-	500.0	"
				4	504.0	-	504.0	"
				5	504.0	-	504.0	"
				6	500.0	-	500.0	"
				7	514.0	감)0.5	513.5	"
-	29	904.6	월하리	910-3	904.6	-	904.6	주 차 장
-	30	2,488.0	술산리	1	622.0	-	622.0	단독주택용지
				2	608.0	-	608.0	"
				3	632.0	-	632.0	"
				4	626.0	증)1.4	627.4	"
-	31	2,047.0	술산리	1	504.0	-	504.0	단독주택용지
				2	497.0	-	497.0	"
				3	490.0	-	490.0	"
				4	556.0	감)0.4	555.6	"
-	32	3,330.0	술산리	1	554.0	-	554.0	단독주택용지
				2	550.0	-	550.0	"
				3	611.0	-	611.0	"
				4	511.0	-	511.0	"
				5	550.0	-	550.0	"
				6	554.0	감)1.2	552.8	"
-	33	2,014.0	술산리	1	550.0	-	550.0	단독주택용지
				2	559.0	-	559.0	"
				3	451.0	-	451.0	"
				4	454.0	감)0.4	453.6	"
-	34	1,622.0	술산리	1	537.0	-	537.0	단독주택용지
				2	512.0	-	512.0	"
				3	573.0	감)0.4	572.6	"
-	35	807.0	술산리	1	807.0			녹 지 용 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1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	1 ~ 8, 10 ~ 22, 26	-	용도	허용 용도	기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 가목에서 아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가,나,라,바,사,아,자,차,카,타,파,하,너,러목(장의사,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가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시설 중 라,마,바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나목에 해당하는 것(12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불허용도	-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

2) 단독주택용지-2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	28, 30 ~ 34	-	용도	허용 용도	기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라목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 가목에서 아목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가,나,라,바,사,아,자,차,카,타,파,하,너,러목(장 의사,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가목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시설 중 라,마,바목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나목에 해당하는 것(12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불허용도		-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나. 상업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	24 ~ 25, 27	-	용도	허용 용도	기정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 가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가목 내지 하목과 너목 내지 러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과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과 제8호의 운수시설에 해당하는 것(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하인 것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과 제28호의 장례시설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시설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가,나,라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가,나,다,마,바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 시설 중 가,라목에 해당하는 것
				불허용도		-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

Ⅱ.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 “계재 생략”

※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군산시 공고 제2020-1769호

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 의 안 건 -

1.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8.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0.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 무상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20년 8월 2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20-1789호

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추가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 의 안 건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 8월 28일

군 산 시 장